## 승강기 안전! 국민행복 실현!

10

#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

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	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	
개정차수	2	
페이지	1 / 19	

#### 1. 목적

이 지침은 지사가 지배·관리하는 장소에서 도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, 안전보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조치를 준수함으로써 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지사가 지배·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도급사업에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그 밖의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법,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3.1 도급

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공단이 지배·관리하는 장소에서 물건의 제조·건설·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.

#### 3.2 도급인

물건의 제조·건설·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지사장을을 말한다.(건설공사발주는 제외)

#### 3.3 수급인

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·건설·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.

#### 3.4 관계수급인

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.

#### 3.5 건설공사발주자

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·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.

#### 3.6 밀폐공간작업

질식·중독·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.



	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	
	제·개정일자	2023.00.00.	
개정차수		2	
	페이지	2 / 19	

#### 3.7 정전작업

전기기계·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·해체·정비·점검으로부터 감전 또는 설비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.

#### 3.8 굴착작업

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을 굴착하는 작업을 말한다.

#### 3.9 방사선작업

전자파나 일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적을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, 중양자선, 양자선, 베타선,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, 중성자선, 감마선, 엑스선 및 5만 전자볼트 이상(엑스선 발생장치의 경우에는 5천 전자볼트 이상)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이 발생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.

#### 3.10 고소작업

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해하는 작업을 말한다.

#### 3.11 중장비 사용작업

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, 수리·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.

#### 3.12 화기작업

용접, 용단, 연마,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.

#### 3.13 가연성물질

안전보건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위험물질의 종류 중 6. 부식성 물질과 7. 급성 독성 물질을 제외한 물질 및 위험물질 이외 인화성유류, 가연성분진, 단열재 등 가연물을 말한다.

## 4. 책임과 권한

#### 4.1 안전보건관리책임자(지사장)

- 1) 해당 사업장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 관리·감독 총괄
- 2) 간소형 도급사업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승인

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	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	
개정차수	2	
페이지	3 / 19	

#### 4.2 안전팀장 또는 안전보건담당자(지사, 출장소)

- 1) 해당 사업장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관련 관리
- 2) 간소형 도급사업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
- 3)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협조

#### 4.3 지역 안전보건관리인력(지역본부 사업팀장 및 안전보건관리인력 1명)

1) 소속지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원

#### 4.4 수급업체 관계자(근로자 포함)

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사항 이행

#### 5. 일반원칙

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의 안전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.

- 1) 업무 경력 6개월 미만 직원(근로자): 단독업무 금지
- 2) 관계법령에서 단독업무를 금지하는 업무: 2인 1조 업무 수행
- 3) 해당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의 업무, 중 장비 사용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작업지휘자 지정을 요구하는 업무: 작업지 휘자 지정

## 6.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의무

#### 6.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(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)

- 1)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
- 2) 작업장 순회점검
- 3)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
- 4)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
- 5)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작업장소에서 화재·폭발·토사·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
- 6) 휴게시설, 세면·목욕시설, 세탁시설, 탈의시설, 수면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
- 7)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
개정차수	2
페이지	4 / 19

등의 작업시기, 내용,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,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·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, 내용 등의 조정

8)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관리

#### 6.2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(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)

- 1) 건설공사의 계획,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
  - 가. 계획단계 :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·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
  - 나. 설계단계 :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,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·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
  - 다. 시공단계: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,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
- 2)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(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해당공사에 한함)
- 3)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
- 4)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
- 5)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영
- 6)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확인

#### 6.3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안전보건조치의무

- 1) 안전보건관리 등「산업안전보건법」준수에 관한 관리
- 2) 사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 실시를 통한 문제점 개선 협조
- 3)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시설 장소 설치 또는 도급인 제공 장소 이용
- 4) 각종 안전보건 관련 정보 공유 및 재해 사례 홍보
- 5) 비상 연락망 작성 및 유지
- 6) 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 환경 개선 협조(필요시)
- 7)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
- 8) 위험성평가 실시 및 지속적 개선 협조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	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	
개정차수	2	
페이지	5 / 19	

9) 안전관리계획서 등 필요서류 제출 및 공단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사항 이행

#### 7.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

#### 7.1 도급작업 전 안전보건활동

- 1) 안전팀장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1회성 도급사업으로서 수급인이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(이하 "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"라 한다)에 위험성평가가 포함되어 있고,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- 2) 안전팀장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는 도급계약과 관련된 과업지시서, 시방서 등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  - 가. 안전보건교육
  - 나. 위험성평가
  - 다.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(실제 작업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)
  - 라. 안전보건 점검
  - 마. 안전보건정보 제공
  - 라. 공사기간 등 준수
  - 마. 위생시설 등의 협조
  - 바. 안전보건조치 이행
  - 사. 중대재해 발생현황 제출
  - 아.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
- 3) 수급업체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.
  - 가. 작업개요
  - 나. 안전관리현황(작업현장 안전관리조직도,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, 안전보건 교육현황)
  - 다. 위험성평가 결과
  - 라. 작업 중 안전관리대책(현장 안전보건교육 대책, 현장 안전점검 대책)
  - 마.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화학물질 사용·관리현황
  - 바. 비상시 조치계획 등
- 4)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교육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	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	
개정차수	2	
페이지	6 / 19	

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- 5)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안전작업허가서에 안전보건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다.
- 6) 안전팀장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참고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, 도급사업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평가결과 적합한 수급업체에게 도급을 주어야 한다.
- 7)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최종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가 수급업체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을 변경하여야 한다.

#### 7.2 도급사업 중 안전보건활동

- 1)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동 지침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3) 안전팀장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는 작업중지요청제 내용을 수급인 및 수급근로자에게 알려주고, 작업중지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- 4) 수급인은 사업장에 출입하는 근로자 현황을 도급사업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.

#### 7.3 도급사업 후 안전보건활동

- 1) 수급인은 도급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도급사업 장소의 청소 등을 통해 잔존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2) 안전팀장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는 도급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본부 안전관리전담 부서장에게 안전작업허가서 등 도급사업 관련 전체 서류를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8.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

- 1) 안전팀장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는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사업 시작일까지 그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2) 도급사업 종류별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절차는 다음과 같다.
- 가. 연간으로 계속되거나 갱신되는 도급사업: 매년 공단 위험성평가 정기평가 시 수급 업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, 개선계획에 따라 이행점검 실시. 다만, 개선계획이 없는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	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	
개정차수	2	
페이지	7 / 19	

경우에는 교육, 보호구 지급 등 필수사항 이행 확인(필요시에 한함)

나. 1회성 도급사업: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도급사업 시작일 전까지 이행결과 제출토록 하여 점검. 다만, 개선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, 보호구 지급 등 필수사항 이행 확인(필요시에 한함)

#### 9.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

- 1) 평가대상은 지사가 지배·관리하는 장소에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실제 작업을 실시하는 모든 도급사업으로 한다.
- 2) 평가는 7개 고위험 작업에 대한 「고위험 도급사업 평가」와 고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「간소형 도급사업 평가」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이 경우 7개 고위험 작업은 ① 밀폐 공간 작업, ② 정전 작업, ③ 굴착 작업, ④ 방사선 작업, ⑤ 고소 작업, ⑥ 중장비 사용 작업, ⑦ 화기 작업으로 한다.
- 3) 평가는 수급업체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,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(안전보건 공단 발행) 또는 산재요양승인/반려여부 확인서(근로복지공단 발행) 등을 활용하여 실시한다. 이 경우 수급업체가 영세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 에서 제공하는 표준안전관리계획서(양식1)를 제공하여 작성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.
  - ※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또는 산재요양승인/반려여부 확인서 제출이 안되는 수급 업체는 중대재해 미발생 확인서(양식2)로 대체 가능
- 4) 동일한 수급인이 동일한 도급사업을 날짜를 달리하여 계속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- 5) 평가는 평가표(양식3)를 활용하여 실시하며,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여, 세부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.
  - 가. 관리 대상 확인: 해당 도급사업으로 인해 수급업체 근로자가 지역사무소가 지배·관리하는 장소에서 공사(작업) 등 발생 여부 확인(미발생 시 미적용)
    - ※ 관리 대상 도급사업인 경우 계약(소액구매) 이전에 수준평가가 완료되어야 함
- 나. 도급 형식 확인
  - · 조달청 등을 활용한 입찰 계약: 본부 안전관리팀과 별도 사전 협의
  - · 수의계약, 소액구매 : 아래 절차와 같이 진행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
개정차수	2
페이지	8 / 19

- 다. 계약 조건 등 반영(계약조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)
  - ① 시방서, 과업지시서 등 계약 조건 서류를 본부 안전관리팀에 통보
  - ② 본부 안전관리팀에서 안전보건관리 계약 조건 등을 검토 후 회신
- 라. 필요서류 사전 징구(도급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사무소 안전팀장)
  - · 수의계약(소액구매) 예정 수급업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서류 사전 징구
  - · 필요서류: 안전관리계획서,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(또는 산재요양승인/반려여부 확인서) ※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: 지침 5쪽 4) 참조
- 마. 안전보건수준평가
  - ① 고위험 여부 확인 : 작업공정에 △밀폐공간작업, △정전작업, △굴착작업, △방사선 작업, △고소(2m 이상)작업, △중장비 사용작업, △화기작업 여부 확인
  - ② 고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: 본부 안전관리팀과 협의 후 별도 평가 실시
  - ③ 고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(<u>평가 실시자 : 안전팀장 또는 안전보건담당자, 평가</u> 승인자 : 지사장)
    - ③-1. 필요서류 제출 : 계약 예정 수급업체 → 해당 지역사무소 안전팀장
      - ※ 필요서류: 안전관리계획서,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(중대재해 미발생 확인서) 등
    - ③-2.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: 안전팀장 또는 담당자
      - ③-2-1. 평가표를 활용하여 실시
        - ※ 수급업체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평가
      - ③-2-2. 평가항목(평가 확인 내용)
        - · 수급업체 구성원의 안전보건관리 역할 분담 적정성
        - ·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성
        - ·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
        - · 유해·위험물질 안전관리 적정성
        - · 위험기계기구·설비 안전관리의 적정성
        - · 재해발생 수준의 적정성(최근 1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)
      - ③-2-3. 수급업체 선정기준(2가지 모두 부합하여야 함)
        - · 평가항목 모두 적정으로 평가될 것(해당없음 포함)
        - · 최근 1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
    - ③-3. **평가결과 승인**: 지사장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
개정차수	2
페이지	9 / 19

- ※ 평가표에 서명 후 내부결재문서로 보관
- ※ 최종 승인 후 수의계약(소액구매) 진행
- ③-4. 평가결과 사본 통보: 안전팀장 또는 안전보건담당자 → 본부 안전관리팀
- 6) 연간으로 계속되거나 갱신되는 도급사업에 대해서는 최초 또는 이전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평가를 실시한다.
  - 가. 도급사업 또는 작업내용이 크게 변경된 경우
- 나. 수급업체가 변경된 경우
- 7) 평가는 도급사업 계약 전 또는 소액구매 확정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,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업체에는 도급을 주어서는 안된다. 다만,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수급업체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고, 보완된 자료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재평가 결과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## 10.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

- 1) 도급사업의 실제 작업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64조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2)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,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, 협의 체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(양식4)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3) 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.
  - ① 작업장 순회점검
  - ②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
  -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
  - ④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거나, 화재·폭발, 토사·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에 대비한 경보체계의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
  - ⑤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샘시설 이용의 협조
  - ⑥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·내용, 안전보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
  - ⑦ ⑥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·폭발 등 「산업안전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
개정차수	2
페이지	10 / 19

보건법 시행령」제53조의2에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·내용 등의 조정

4)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일지(양식5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#### 11.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의무사항 이행사항

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의무사항 이행내용은 향후 건설공사 발생 시 추가로 정한다.

#### 12. 도급사업의 효율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조치 이행

- 본부 안전관리팀장은 도급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업체 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매반기 현황을 파악하고, 미흡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2) 본부 안전관리팀장은 공단 전 조직별로 도급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인트라넷 등 도급사업의 안전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3) 본부 안전관리팀장은 도급사업 담당자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#### 13. 관련 문서

- 1) 표준안전관리계획서(양식1)
- 2) 중대재해 미발생 확인서(양식2)
- 3) 간소형 도급사업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(양식3)
- 4) 회의록(양식4)
- 5) 안전점검 일지(양식5)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	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	
개정차수	2	
페이지	11 / 19	

### [양식1]

본 계획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중소업체용 표준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. (본 계획서로 안전보건 관계법규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.) 본 계획서를 업체별로 사정에 맞게 수정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## ○○○○○ 안전관리계획서

구분	작성자	승인자
직위		
성명		
서명		
서명일자		

## 업체명

5
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
개정차수	2
페이지	12 / 19

## 1. 작업 개요

ㅇ 작업내용 :

ㅇ 작업예정 일시 : 2023년 월 일 00시 ~ 2023년 월 일 00시

ㅇ 작업예정 근로자 수 : 명

연번	직위	성명	업무경력 연수
1			
2			
3			
4			
5			

### 2. 안전관리현황

## 〈1〉작업현장 안전관리조직(양식 변경 가능)

구분	세부내용
안전관리책임자	(성명)
(작업지휘자 겸임)	(역할)
안전담당자	(성명)
1선급 7 기	(역할)

## 〈2〉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

연도	총계	중대재해	부상(질병)재해
2022년	0	0	0
2023년 현재	0	0	0

※ 중대재해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로서 △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또는, △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, △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함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
개정차수	2
페이지	13 / 19

## 〈3〉 안전보건교육현황

직위	성명	정기(매월 또는 매분기)교육
		□ 실시 □ 미실시

3. 위험성평가 결과(다른 방법(양식)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가능, 분량은 상관없습니다.)

어비	0 웨이킹 0 이	현재	위	험수	준	-에 2년 -에 -레	개선
연번	유해위험요인	안전관리현황	상	중	하	개선대책	완료일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
- ※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현재 안전관리현황(보호구 사용, 교육 등) 수준에 따라 위험수준을 정하여 "○"표시를 하십시오
- ※ 위험수준이 "중" 이상인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기록하고, 공사 시작일 전까지 개선을 완료하셔야 합니다.("하"는 개선대책 작성 대상 아님)

5
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REA ELEVATOR SAFETY AGENCY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
개정차수	2
페이지	14 / 19

## 4. 공사(작업) 중 안전관리대책

### ⟨1⟩ 현장 안전보건교육 대책

구분	교육대상	교육내용・방법
작업시작 전		
작업 중		
기타		

## <2> 현장 안전점검 대책

구분	안전점검 내용・방법
작업시작 전	
작업 중	
작업완료 후	

## 5.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화학물질 사용 · 관리현황

※ 사용하는 경우 3. 위험성평가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,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계기구명·화학물질명 란에 해당없음 기재

## 〈1〉 중장비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・관리현황

유해위험기계기구명	안전검사・인증 유무	안전관리대책
	□ 실시 □ 미실시	
	□ 실시 □ 미실시	
	□ 실시 □ 미실시	

※ 안전검사 합격증 또는 안전인증 합격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
개정차수	2
페이지	15 / 19

### 〈2〉화학물질 사용·관리현황

화학물질명	물질안전보건자료 유무	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여부
	□ 보유 □ 미보유	□ 실시 □ 미실시
	□ 보유 □ 미보유	□ 실시 □ 미실시

- ※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6. 수급업체 연락체계
  - ㅇ 현장작업책임자: (성명)

(휴대폰)

- ※ 작업책임자는 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 중 책임자를 작성하십시오.
- ㅇ 비상연락처: (성명)

(휴대폰)

- ※ 비상연락처는 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 이외의 책임자로 작성하십시오.
- 7. 비상시 대응체계
  -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: ① 즉시 작업증지 → ② 피사고자 상태 파악 → ③ 필요한 경우 119 신고 → ④ 공단 관계자에게 통보 → ⑤ 공단 관계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작업재개 결정
  - ㅇ 지정병원(있는 경우에만 작성):
- 8. 공단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
개정차수	2
페이지	16 / 19

[양식2]

□ 업체명:

## 중대재해 미발생 확인서

- □ 위 업체는 최근 1년간('00.00월~'00.00월)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및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- □ 이 사실이 거짓인 경우에는 도급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관련법률 등에 따른 민·형사사상의 책임은 우리 업체에 있음 을 확인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업체명 사장(대표) ○○○ (인)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
개정차수	2
페이지	17 / 19

## [양식3]

간소형 도급사업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	담당	검토	승인
※ 담당자, 검토자: 안전팀장 또는 안전보건담당자			
※ 승인자: 지사장			

Г	٦	폊	7	ŀ잌	•
			•		•

- □ 계약(소액구매) 예상 수급업체명 :
- □ 도급사업 현황
  - ㅇ 사업명 :
  - o 사업기간:
  - o 사업금액:
- □ 평가표(6개 평가항목 중 미흡사항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 금지)

평가항목	평가기준	평가결과
1. 안전관리활동 역할 분담	·안전관리활동 이행에 필요한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부여의 적정성 ·작업지휘자 지정 여부 등	<ul><li>□ 적정</li><li>□ 미흡</li></ul>
2.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성	·위험성평가 실시 여부(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거나 별도 제출 가능) ·위험성평가 누락 여부(유해·위험물질, 취급 위험기계 기구·설비에 대한 평가 여부 등)	□ 적정
3. 안전보건교육 적정	·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·유해·위험물질, 취급 위험기계기구·설비에 대한 교육 여부	<ul><li>□ 적정</li><li>□ 미흡</li></ul>
4.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	·작업 전, 작업 중, 작업 후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	<ul><li>□ 적정</li><li>□ 미흡</li></ul>
5. 유해·위험물질 안전관리 적정성	·유해·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 보유 및 사용 근로자 교육 여부 ※ 판단이 곤란한 경우 본부 안전관리팀에 문의	<ul><li>□ 적정</li><li>□ 미흡</li><li>□ 해당없음</li></ul>
6. 위험기계기구·설비 안전관리 적정성	·각종 위험기계기구·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법정 안전 검사(인증) 및 사용 근로자 교육 여부 ※ 판단이 곤란한 경우 본부 안전관리팀에 문의	<ul><li>□ 적정</li><li>□ 미흡</li><li>□ 해당없음</li></ul>
7. 재해발생 수준의 적정성	·최근 1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	□ 발생 □ 미발생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
개정차수	2
페이지	18 / 19

## [양식4]

## 회의록

						<b></b>	작성	검토	승인
날 짜 : 장 소 :	년	월	일 (	~	)	결     재			

승강기안전공단		협력사	
협의 및 건의사항			
기 타			



문서번호	자율 지사-KoELSA-10	
제·개정일자	2023.00.00.	
개정차수	2	
페이지	19 / 19	

## [양식5]

## 안전점검 일지

점 검 일: 년 월 일

구 분	점 검 위 치	비고
주요작업 및 취약설비		

항 목	점 검 사 항	이상유무	조 치 사 항
	비상상황시 보고체계 확립 상태		
	시설물 및 건축물 침수, 붕괴 가능여부		
공 통	재해 복구물자 보유현황 및 펌프 등 기기 고장여부		
0 6	위험작업 구역표시 및 통제구역 설치 상태		
	작업자 보호구 착용 및 사고 우려지역 안전조치 상태		
	작업장 정리, 정돈 등 청결상태		
	화재발생 우려지역에 소화기 비치 상태		
화재 및 가스	인화, 폭발 가능설비 취급 및 관리상태		
설비	소방시설의(화재감지, 경보설비, 소화설비) 작동상태		
	연료공급설비, 가스배관 및 석탄취급설비 상태		
	그물망 설치,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 상태		
고소작업	맨홀. DUCT COVER 등 실족우려 안전망, 안전난간, 발끝막이 판 설치 상태		
	사다리 미끄럼 방지판 설치 및 2인1조 작업준수 여부		
	통로상에 낙하물(제작자재 잔재)방지대책		
밀폐공간	작업 승인 및 산소농도 측정 여부(안전보호구 비치여부)		
글페 <b>ㅎ</b> 건	유독성 물질 발생여부 및 호흡보호구 착용상태		
어자사하	회전기기 안전 Cover 탈착 상태		
협착작업	기기정지 시 Tag 부착, 작업 2인1조 준수여부		

비고(기타 지적사항 및 안전조치 요구)